

민원 인쇄 ✕

인쇄자: 김명호

---

## 신청 정보

신청번호	1AA-2604-0152765
신청일	2026-04-04 09:24:53
신청인	김명호
신청인 구분	개인
주소	-
진행상황 통지방식	전자우편 , 누리집(홈페이지)
민원답변 통지방식	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
유선전화	
휴대전화	
전자우편	
보안 설정	아니요

---

## 민원 신청 내용

**민원종류**  
**제목**  
**내용**

일반민원

서울시경찰청, 청장 박정보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을 고발한다

고소인: 김명호

피의자: 서울시경찰청, 청장 박정보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

제목: [형법] 제122조(직무유기), 제123조(직권남용), 제227조의 2(공전자기록위작·변작), 제30조(공동정범)

피의자들은

[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](이하 "경찰법") 제28조(시·도경찰청장) 제3항과 [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] 제33조(청문감사인권담당관) 제2항에 규정된 의무 가진 경찰들로서,

[경찰법] 제5조(권한남용의 금지) "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켜야 하며,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

에 따라, 소속 공무원 지휘/감독함으로써, 불가침의 국민 권리에 대한 침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"전자 문서 위조 및 변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설비 제공"함으로써, 불가침의 국민 권리들 침해하고 있다.

피의 사실

고소인은, 2026.3.19일 은평경찰서의 [주차장법] 위반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, 서울시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고(1AA-2603-0768486)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오승표가 처리담당으로 배정되었는데,

오승표는

1. "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렵다"는 이유로 연장하고는
2. 처리기관 및 담당을 은평경찰서의 이주철로 변조한 것이다

조작 과정: 3.27일 담당 오승표(자료1, spoh20260327.jpg) ⇒ 3.29일 담당 공란(자료2, empty20260329.jpg) ⇒ 3.31일 담당 이주철(자료3, jcleee20260331.jpg)

3. 하여 고소인은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오승표 기피 및 징계 신청하였더니, 기피신청 묵살하며 범죄자 오승표 자신이 담당(자료4, oh2.pdf)... 혼자 복치고 장구치며 불가침의 국민 권리 보호 의무의 경찰이 국민 권리 짓밟고 자빠진 거다

[결론]: 피의자 박정보, 서기용은 직무유기, 직권남용은 물론, "전자 문서 위조 및 변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설비 제공"함으로써

[형법] 제227조의 2(공전자기록위작·변작)의 공동정범([형법] 제30조)인 것이다

조작이 일상화된 경찰년놈들 엄벌에 처해라(참조: <https://seokgung.com/inforequest.htm#ex>)

첨부 자료

- 1. spoh20260327.jpg
- 2. empty20260329.jpg
- 3. jcleee20260331.jpg
- 4. oh2.pdf

첨부 파일

oh2.pdf spoh20260327.jpg empty20260329.jpg jcleee20260331.jpg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	대검찰청
------	------